

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(안)

□ 추진 배경

○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 개정

<물품구매(제조)계약추가특수조건 제8조익7(납품시 준수 의무 등)>

- 우수조달물품은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할 수 없으나, 수요기관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는 우수제품이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 할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불임의 서식에 따라 서면 합의한 경과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
- * 경미한 규격변경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지 안내

○ 위 개정에 따른 쟁점

-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명문화된 기준 부재 및 기술적 전문성 부족
- 수요기관(조달청 포함)의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으로 계약업체 주장이나 로비에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음
- 이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받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업체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어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 허용에 대한 고소고발 등 민원발생
- * 그 동안 우수조달제품에 대한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 때문에 빈번한 민원 발생으로 위 규정으로 보완하려 하지만 근본적 해결이 미흡하여 민원소지는 여전히 상존

□ 개선 방안 건의

- 그 동안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에 대한 판단을 전문성과 공신력이 부족한 수요기관(조달청 포함)과 우수제품 지정업체 판단에 의존해왔으나, 공신력있는 해당품목의 관변 단체를 참여시켜 보완을 제안
- 품목별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내에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 등 민원발생 시 기술적 전문성 판단 의견을 수렴할 기술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

<조사위원회 구성>

○ 해당품목 비영리 관변단체

- 중소기업법령에 의한 협동조합 :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 2,828개
- 국토부 등 정부조직 법령에 의한 협회 : (사)한국막구조물협회 등 다수

○ 조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

- 각 조달품목별 관련 관변단체 자율적으로 맡기되 단체장을 포함한 이사 7인 -10인으로 하고, 조달청에서는 권고 또는 장려 등 행정협조 요청

* 조사위원 자신이 포함된 사안에 대하여는 의사결정에 본인 참여 배제 등 내부 기준 마련

○ 조사위원회 활동 범위

- 조달청에서 민원발생 시 해당 관변단체 의견 수렴으로 활용

○ 기대효과

- 민감한 기술문제 발생 시 해당품목 전문단체 의견도 수렴하여 종합 판단함으로써 조달물품에 대한 대외 공신력 제고 및 민원발생 소지 사전 차단

□ 향후 추진

- 품목별 비영리단체 이사회 안건 상정하여 심의 결정
- 이사회 통과 후 조달청(우수제품구매과)에 사전 방문하여 설명 후 정식 공문으로 건의 여부를 추후 판단

[별표3] 규격변경 서면합의 결과 제출 서식(제8조의7)

우수제품 규격변경 합의서

☐ 수요기관 :

☐ 납품요구번호 / 납품요구금액 :

☐ 규격변경 사유 :

☐ 규격변경 검토내용

구분	지정규격	변경규격
적용기술 (구성대비표 기준)		
품질수준 (규격서 시험항목)		
납품단가 (규격서 변경규격)		
기타		

1) 수요기관이 규격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한 공문 반드시 첨부

2) 규격변경 관련 도면, 변경자재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가능

「물품구매(제조)계약 추가특수조건」 제8조의7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요기관과 규격변경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하고 합의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수요기관 소속: 직책: 성함: (서명 또는 인)

조달업체 소속: 직책: 성함: (서명 또는 인)

조달청장 귀하